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관한”으로 한다.

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제6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80”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2”를 “4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0”을 “453”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생략)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u>
<u><신 설></u>	<u>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 의 권고</u>
<u><신 설></u>	<u>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u>
3.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u>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관한</u> ----- -----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u>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u>제6장 한시정원</u>
<u>제17조의2(공공재정 환수제도과)</u>	<u><삭 제></u>

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
1호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
재정환수제도과를 둔다.

②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
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
항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
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

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
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5.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6.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에 관한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0</u>	<u>483</u>	+3
•	•	•	
•	•	•	
일반직 계	<u>472</u>	<u>475</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0</u>	<u>453</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5